



# 허가대상물질 작업관리 등

제3편 보건기준

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452조 ~ 제461조

##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?

-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·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함

### ☑ <허가대상 유해물질>

- |  |  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α-나프탈아민[Cas No 134-32-7] 및 그 염</li> <li>② 디아니시딘[Cas No 119-90-4] 및 그 염</li> <li>③ 디클로로벤젠디딘[Cas No 91-94-1] 및 그 염</li> <li>④ 베릴륨[Cas No 7440-41-7]</li> <li>⑤ 벤조트리클로라이드[Cas No 98-07-7]</li> <li>⑥ 비소[Cas No 7440-38-2] 및 그 무기화합물</li> <li>⑦ 염화비닐[Cas No 75-01-4]</li> <li>⑧ 콜타르피치[Cas No 65996-93-2] 휘발물</li> <li>⑨ 크롬광 가공<br/>(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⑩ 크롬산 아연[Cas No 13530-65-9]</li> <li>⑪ o-톨리딘[Cas No 119-93-7] 및 그 염</li> <li>⑫ 황화니켈류[Cas No 12035-72-2, 16812-54-7]</li> <li>⑬ ①~④까지 또는 ⑥~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<br/>(포함된 중량 비율이 1% 이하인 것은 제외)</li> <li>⑭ ⑤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<br/>(포함된 중량 비율이 0.5% 이하인 것은 제외)</li> <li>⑮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</li> </ul> |
|--|---|

### ☑ 용어정의

[제조]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·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

[사용]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

[가열응착]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·굳어지는 현상

[가열탈착]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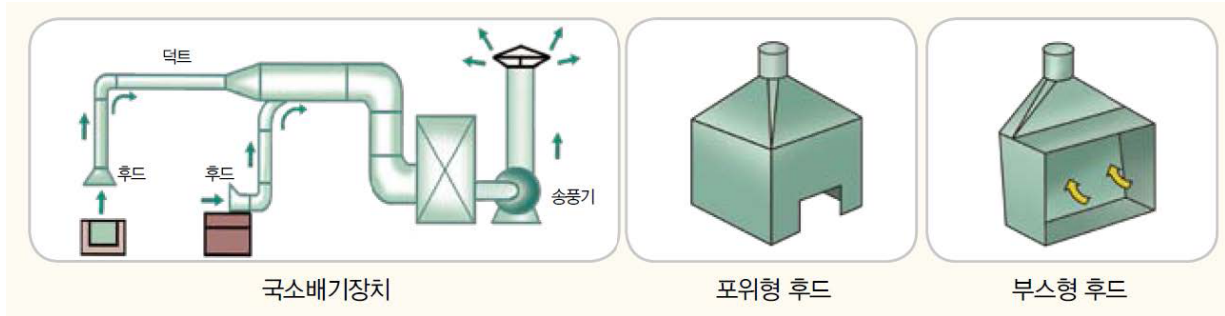
##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및 사용

- 제조 및 사용 시 준수사항(베릴륨 및 석면 제외)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,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물청소 가능 구조로 하는 등 해당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
- 원재료 공급이송 또는 운반 시 해당 작업 종사자의 신체에 그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
- 반응조(batch reactor) 및 교반기 등의 덮개부분으로부터 가스·증기가 새지 않도록 개스킷 등으로 접합부 밀폐
- 가동 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 내부점검 필요 시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- 분말상태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 또는 격리실에서 원격조작 및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



- 제조 및 사용 시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가스·증기·분진의 발산원 밀폐설비나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(베릴륨 및 석면 제외)



- 다만, 작업 성질상 상기 설비 설치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설치 가능 (상방흡인형은 제외)

### 3 국소배기장치의 설치·성능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및 사용시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은 적정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설치

물질의 상태	제어풍속(m/s)
가스상태	0.5
입자상태	1.0

- [제어풍속]**
1.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을 말함
  2.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함
    - 가.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
    - 나.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

### 4 배출액의 처리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,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배출액을 중화·침전·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



## 5 사용 전 점검 등

- 국소배기장치 설치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분해·개조·수리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동안 보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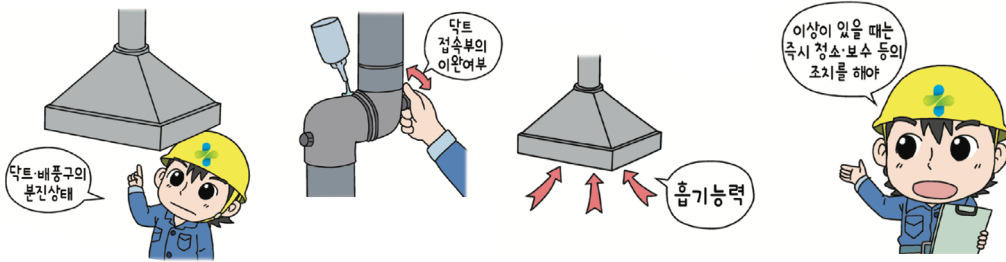
### ☑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사항

- ①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
-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
- ③ 흡기 및 배기 능력
- ④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

### ☑ 국소배기장치 점검 기록 및 보존

- ① 점검년월일
- ② 점검 방법
- ③ 점검 구분
- ④ 점검결과
- ⑤ 점검자의 성명
- ⑥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

- 사용 전 점검 결과 이상 발견 시 즉시 청소·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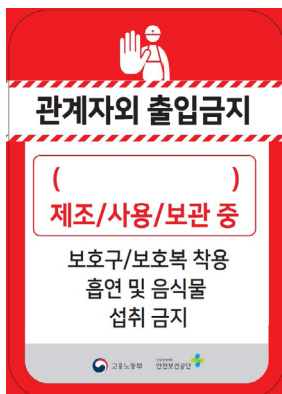


## 6 출입의 금지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작업장에 관계자의 출입금지 조치 및 출입구에 관련 표지 부착. (석면 제조·사용 작업장에는 석면 관련 표지 부착)

### \*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]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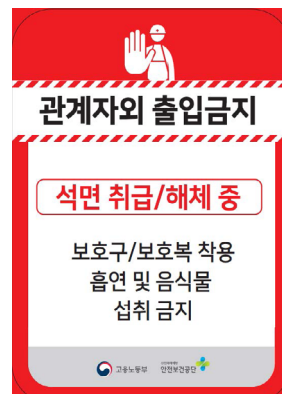
#### ✓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



관계자의 출입금지  
(허가물질 명칭) 제조/사용/보관 중  
보호구/보호복 착용  
흡연 및 음식물  
섭취 금지



#### ✓ 502 석면취급/해체 작업장



관계자의 출입금지  
석면 취급/해체 중  
보호구/보호복 착용  
흡연 및 음식물  
섭취 금지



-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·폐기하며, 그 장소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및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-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 허락 없이 출입 금지



## 7 명칭 등의 게시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작업장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,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- 근로자는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금지

## 8 명칭 등의 게시 및 유해성 주지
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 작업장 내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 명칭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, 유해성 등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주지

### ☑ 명칭 등의 게시

- ①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
-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
-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
-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
- ⑤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



### ☑ 국소배기장치 점검 기록 및 보존

- ① 물리적·화학적 특성
- ②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
-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
-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
- 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
- ⑥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



## 9 용기 등

-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
- 허가대상 유해물질 운반·저장하는 경우 그 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
  -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해당 물질의 명칭과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

